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85

발의연월일: 2021. 11. 8.

발 의 자:이종성·김기현·김영식

박대수 · 박형수 · 서범수

서일준 • 이종배 • 정운천

한무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,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비미하여 해당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 황이므로,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,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, 결격사유, 자격 정지

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,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함.

주요내용

- 가.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 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제5 호의2 신설).
- 나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).
- 다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(안 제21조의2 신설).
- 라.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- 마.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, 결격사유,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).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4조제3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 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

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4항, 제6항 및 제7항에"로, "지정 및"을 "지정 절차 및"으로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4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「의료법」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 - 5.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
 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.
-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

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방법"을 "방법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지정기간 및 운영"으로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을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"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4조의2(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)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돌보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24조의3(장애아동돌보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
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
- 10.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

한 사람

- 제24조의4(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) ① 시·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가.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나.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다.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 히 하는 행위
 - 라.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
 - 마.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 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
 - 2.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 - 3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
 - ② 시·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제2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3.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
- 4.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- 5.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한 경우

제3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6조 중 "제32조제4항"을 "제24조제4항,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지사로부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지사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) ①	제8조(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	
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	
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	
영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의2. 제24조제3항에 따른 돌봄</u>
	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
	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
	<u>평가</u>
6. •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	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
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	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
제21조(발달재활서비스지원) ①	제21조(발달재활서비스지원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
	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
	<u>정하는 인력·시설 기준 등을</u>
	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
	<u>청하여야 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	<u> </u>
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	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⑦ (생략)

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기준·절차, 지정기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
장 또는 종사자가 「의료법」
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
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
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
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
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⑨</u> 제4항, 제6항 및 제7항에
- <u>지정 절차 및</u>

제21조의2(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 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 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2.
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

 률」
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

 중독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아나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

제2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

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로 채용될수 없다.

제2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을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"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제공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 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못하게 된 경우
- <u>⑤</u> -----

지지원의 대상·지원기준 및 <u>방</u>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법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돌 본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지정기간 및 운영---

제24조의2(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)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돌보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한다.

- 제24조의3(장애아동돌보미의 결 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동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<u>피한정후견인</u>
 - 2.
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

 률」
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

 중독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반

 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

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 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되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판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

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7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
- 10.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지 아니한 사람

제24조의4(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) ① 시· 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장애아동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<u><신 설></u>

- 가.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<u>나.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</u> 협박하는 행위
- 다.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
- <u>라.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</u>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
- 마.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 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 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
- 2.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 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- 3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 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 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

 오

제30조(복지지원 제공기관) 다음 제30조(복지지원 제공기관)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 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 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신 설>

② 시·도지사는 장애아동돌보 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장애아동돌보미로 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제2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. 장애아동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 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.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 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.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 분기간에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

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
6.·7. (생략) <신 설>

제36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은 제21조제6항, <u>제32조제4항</u>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기관

6. • 7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관계 기관 간 업무협 조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6조(청문)
제24조제4항,
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